

영동 크로바 파크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8.18.(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현재 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영동군 거주자가 우선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신청자별,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및 층·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층·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유의 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8.18.(화)**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당첨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첨자의 층·호수 배정시에만 반영됨.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도시건축과-35728호(2015.08.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영동읍 동정리 101-5번지 외 2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1층~지상 15층 1개동 총 56세대 및 기타 시설

[일반특별공급 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 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일반 특별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 주택		84.7064	84.7064	26.5452	111.2516	1.2117	112.4633	45,8688	42	4	4	4	1	13	29	2016 1월 예정
		84.7521	84.7521	27.4248	112.1769	1.2124	113.3893	45,8936	14	1	1	1	1	4	10	
소 계		4,744.1982	4,744.1982	1,498.8456	6,243.0438	67.8650	6,310.9088	2,569.00	56	5	5	5	2	17	3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VAT포함)

타입 (유형)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잔금 (계약금-중도금)
					대지비	건축비	총 분양금액		1회(30%)	2회(30%)	
								계약시	15년09월15일	15년11월15일	임주시
84-A	84.7064	2층	3	42	27,542,098	199,457,902	227,000,000	10,000,000	68,100,000	68,100,000	80,800,000
		기준층	39		27,542,098	201,457,902	229,000,000	10,000,000	68,700,000	68,700,000	81,600,000
84-B	84.7521	2층	1	14	27,553,705	199,446,295	227,000,000	10,000,000	68,100,000	68,100,000	80,800,000
		기준층	13		27,553,705	201,446,295	229,000,000	10,000,000	68,700,000	68,700,000	81,600,000

※공통사항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함.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참고사항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 신혼부부/노부모	2015.08.24.(월) 10:00~15:00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영동 크로바 파크뷰 분양사무실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101-5번지	•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일정 참조 • 층·호수 배정 추천은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배정 추천함.
특별공급당첨자 선정		2015.08.24.(월) 17:00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기타 특별공급 신청자[기관추천(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 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총·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총·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총·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총·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총·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일반(10%)	다자녀가구(10%)	신혼부부(10%)	노부모부양(3%)	소계
84A	4	4	4	1	13
84B	1	1	1	1	4
합계	5	5	5	2	17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일반 특별공급

• 신청자격(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에서 제외됨.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에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2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5 [2013.12.27]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옥천군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충청북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와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영동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재혼일 경우에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함.

※ 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031원 이하

-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357,446원) + {1인당 평균소득(375,615원) * (N-5)} * N → 6인 이상 가구원수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임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임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①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बैं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영동군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절차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상기 주택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 영 주 택	영동군 / 충청북도	1순위	전 주택형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일반/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총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북도 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용(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 청약신청 시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오기 등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점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점수는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주자 지속 가입기간	17	3명	2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 (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금 액	신청금 납부 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 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 (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시(09:00~16:00) : 가능한 영등군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의 영업일(2015.09.02) 이후부터 평일(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구 분	환 불 장 소	비 고
인터넷 신청 시	은행에서 청약자 계좌로 송금	-
은행창구 접수 시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방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창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

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비고
특별공급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2015.08.24.(월) 10:00~15: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영동 크로바파크뷰 견본주택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정동리 101-5번지	
일반공급	1순위	• 2015.08.25.(화) 08:00~17:30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2순위	• 2015.08.26.(수) 08:00~17:30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ap2you.com)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주택청약 참가은행(16개)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 신청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에서 가능]

■ 일정안내

구분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	당첨자발표	계약일정
일시	2015.08.24(월)	2015.08.25(화)	2015.08.26(수)	2015.09.01(화) 인터넷, 전화, ARS로 당첨사실 확인, 휴대폰 문자서비스, 견본주택 개시	2015.09.07(월)~2015.09.09(수) 견본주택에서 계약 체결

※ 상기 회차별 청약일정을 확인 하시어, 청약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이혼,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 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본인	입양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및해당자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8.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표1)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읍면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층·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 공급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 후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층·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됨.
일반 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층·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 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층·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층·호수를 배정함. (층·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확인 후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세대 및 계약취소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층·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건본주택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09.02. ~ 2015.09.12. (10일간)	
전화 /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5.09.02. ~ 2015.09.12.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09.02(수) 08:30 (단,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기간 : 2015.09.07(월) ~ 2015.09.09(수) (3일간, 시간 : 10:00 ~ 16:00)
- 계약장소 : 당사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 및 전화번호 참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정기간(7일)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2)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은 반드시 아래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총·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타인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당사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 한 은행에서 계약금을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을 못할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타인명의로의 입금으로 인한 기타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농협	351-0817-9971-43	주택도시보증공사(주)대전충청지사	※ 입금시 비고란에 총·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 분양대금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시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3) 계약시 구비사항 (공동)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본인 계약 체결시)	1)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2) 계약금 입금 확인증 3)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4)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분)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장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추후, 계약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4)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채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당첨사실 유무 : 금융결제원에서 검색, 주택소유여부 : 국토교통부에서 검색)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아파트공급계약이 취소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의 계좌는 부활되지 않음(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재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건축시 주택에 진·출입을 위해 국공유지 등의 도로를 점용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날로부터 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당사에서 임의 분양함.
- 사전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층·호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기타 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를 통보할 의무가 없음)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 자필서명시(사업주체가 정한 금융기관과의 기간 내)에 한하여 사업주체는 대출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대납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로 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가 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이 불가하여 타금융기관 대출희망 및 융자실행시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금융기관, 시행사와의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 입주지정 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6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자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공동주택의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용면적	주거용면적
주거용면적 (주거용면적)	84.7064㎡	84.7521㎡
확장 공사비	5,000,000	6,00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마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벽두께, 천정형태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인접세대 확장시 단열 두께 만큼 발코니 측 일부 벽이 두꺼워 질 수 있음/ 양측세대 확장시는 무관)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당사에 하자 처리 요청을 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재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우물천정 깊이의 감소등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으로 인하여 세대별 반자높이 차이, 가구 및 구조체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할 예정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없이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2009.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단, 세대당 주택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증감면적이 계약면적의 2% 미만일때에는 상호간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음.(견본주택 공개기간: 정당당첨자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철거예정임. 단, 철거시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함)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인쇄물(카달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조경,시설물,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타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시공 현장들과 비교하여 이로 인한 이의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조경,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하며, 공극과 스크래치가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전기시설 등에 의하여 배치/설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그로인한 시공시 기본시설물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함.
- 어린이 놀이터 및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내 보일러 가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 설치부위 등의 비노출면은 별도마감이 없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안테나, 파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경관조명의 설치/사용할 경우 공용전기료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상부에 배관이 노출 및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수기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평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배치도를 확인하여야 함.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층·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단지내 조경계획에 따라 일부 동은 입주시 고가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보행자 또는 비상차량에 의해 거주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에 시야 차폐 및 소음 등에 의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샤시는 층수 및 향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아로 인하여 유리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음.
- 발코니샤시는 바람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바닥재 기준 1.2m 높이로 설치됨.

- 피난 대피소는 개구부의 크기가 관련 법적 조건으로 설치 되어 있으며, 향후 입주 후 사시를 개별 설치할 경우에는 법적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해야 함.
- 피난 대피소의 출입문은 법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철재 방화문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주후에도 개별적으로 이를 제거하여 일반 목재 또는 플라스틱 문으로 설치할 수 없음.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마감두께로 인하여 안목길이는 줄어듦.
- 각 세대의 대피공간에는 겨울철 동파를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 설비는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스프링클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가구, 마감 및 단열재 설치에 따른 벽체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조경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 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조경수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경 포장에 있어서 인허가 대비 품질의 변화는 없으나, 조감도 대비 패턴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곽 경관녹지 등 조경 수목은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는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카탈로그에 표현된 평면의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안목 치수가 아님
-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리브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각 동 of 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카탈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의 단지 내외부 도로의 차선과 보행로 등은 관련법령 등의 준수를 위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 색채는 임의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색채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시설물의 용도와 내부 시설물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 및 설치될 예정임.
-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는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함.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전열교환기 및 장비노출로 인한 미관저해로 자연환기시스템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부분에 가스매립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SIZE 500*500)가 설치될 수 있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경미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됨.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PF대출금 상환 포함)에 사용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고시기준 제8조	▪ KS F2292에 따라 창호 기밀성능 2등급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고시기준 제13조	▪ 거실/침실/주방: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고효율 기자재	가정용 보일러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시기준 제14조	▪ 전용면적 60㎡초과 세대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 해당없음
	전동기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고시기준 제15조	▪ 세대/공용부위: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난방/급탕 /급수펌프	적용	고시기준 제9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시기준 제15조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고시기준 제16조	▪ 세대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고시기준 제17조	▪ 세대 내 수전류: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 소방, 통신감리
회사명	(주)아이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영인전기설계감리, 동아ENG
감리금액	110,000,000원	19,950,000원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712015-101-0001700 호	8,249,6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성립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한다)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등록업자 : 주식회사 덕인건설 (등록번호 : 대전080045)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아주토건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 안길71 지하1층 / 사업자등록번호 : 314-86-58900 / 주택건설면허 : 대전-주택2014-0004)

▣ 시공사 : 주식회사 덕인건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삼성동 164-6 남성빌딩 4층 / 사업자등록번호 : 305-81-47684 / 주택건설면허 : 대전-주택2005-0015)

▣ 건본주택 위치 및 안내전화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101-5번지 / 문의전화 : 043)745-1114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